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64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부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709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홍등기소 2018. 8. 21. 접수 제128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5. C를 상대로 2015년경 발생한 계금 및 대여금 채권 합계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홍군법원 2018차154호), 2018. 8. 2. 'C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2018. 8. 21.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와 2009. 12. 23. 혼인하였다가 2018. 10. 10.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다. C는 자신이 2011. 11. 23.부터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8. 21. 피고에게 2018. 8. 2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와 피고는 부부였던 자들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고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임을 알고 피고와 통모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25,000,000원의 계금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9. 12. 23. C와 혼인하여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재산 취득 및 유지와 가치증식에 협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은 C와 피고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 제1, 3호증, 을 제9, 10, 16, 17, 18, 21,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사실조사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계약 무렵 C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가 78,000,000원 상당의 선박 'G'(어선번호: H, 이하 '이 사건 G'라 한다), I 코란도스포츠 차량이 있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G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D조합장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선박 'F'(어선번호: J, 이하 '이 사건 F'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K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258,948원, 이 사건 F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K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3,620,009원 (53,620,009원 + 7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및 C의 L조합에 대한 채무 4,750,860원, K조합에 대한 채무 4,200,000원, M에 대한 채무 114,400,000원, 피고의 K조합에 대한 채무 27,000,000원, 15,000,000원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피고 및 C가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및 C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재산분할로서 청산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설령 이 사건 F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이 사건 F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제외하면 24,741,052원[(45,000,000원 + 78,000,000원) - (70,000,000원 + 28,258,948원)]이고, 그 중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45,000,000원이나,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8,258,948원이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8,370,526원 [16,741,052원(45,000,000원 - 28,258,948원) ÷ 2]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 을 제11, 15, 22,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사실조사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 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이 사건 부동산 및 2010. 3. 26. C 명의로 등록된 'E'(어선번호: N, 이하 '이 사건 E'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대금을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1. 11.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O으로부터 C의 명의로 매매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C 명의의 계좌에서 O 명의의 계좌로 2011. 11. 18. 지급된 잔금 30,000,000원은 이 사건 E의 어선감척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어선감척보상금의 대상인 이 사건 E는 P으로부터 2010. 3.경 C의 명의로 매매대금 32,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피고의 동생인 Q 명의의 계좌에서 P 명의의 계좌로 2010. 3. 26. 위 매매대금의 잔금 27,000,000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와 C의 혼인기간 중이던 2014. 10. 15.부터 2018. 8. 11.까지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은 약 76,440,108원이고, C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약 11,730,000원인

점, C는 2011. 4. 19. 사업자등록을 하고 'R'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2. 6.경까지 총 26,282,00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4. 3.경까지는 매출액으로 0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매출액 신고내역이 없고, 2014. 6. 23.경 D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원받아 S로부터 이 사건 G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C가 어업활동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자신이 운영한 커피매점은 돈벌이가 되지 않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번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금전의 지급 등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의 마이너스 통장내역을 보면 2015. 6. 15. 'C대출금상환'이라는 내용으로 5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C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한 T가 B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C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해 준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잔여 피담보채무액은 약 28,258,948원이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에게 송금한 약 76,440,108원은 피고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담보채무가 전액 피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일부 공제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이 전체 재산분할대상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진

판사 김종근

판사 이세라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목록

1동의 건물표시

전남 고흥군 U에 있는

V아파트 W동

(도로명 주소)

전남 고흥군 X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Y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면 적 : 11층 Z호 49.62m²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남 고흥군 U 대 10444m²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0444 분의 30.78

- 이상 피고 지분 1/2전부 -